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구합41150

### [재판요지]

발주자인 선박회사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2차 회식 중 회식장소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 문]

1.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신○○는 ○○주식회사에서 도장 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팀장의 지시로 파트장인 박○○의 주관 하에 실시된 1차 회식에 이어 가진 2차 회식에 참석하여 여흥을 즐기던 중 2차 회식이 끝날 무렵 보이지 않다가 그 다음 날 회사 동료직원에 의해 회식장소에서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회식 중에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여 행사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도장 1팀장의 지시에 따라 파트장인 박○○의 주관 하에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집으로 전화도 걸기 위하여 회식장소에서 50m 떨어진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춤을 내리려고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40~50cm 정도의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하였는바,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기 위한 위 회식은 소외 회사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그 비용도 모두 소외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보전되었던 점, 망인의 참석도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소외회사의 도장 1팀에서 과장 직책으로 선박의 내외부 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선박의 내·외부 도장작업은 주로 육안 검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대한 검사보다 감독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어서 도장작업의 책임자는 가능한 한 선주측의 감독관을 자주 만나 선주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도장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감독관의 검사를 원만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3) 노르웨이 소속 선박회사인 ○○이 발주한 천연가스운반선인 LNG선의 주수탱크에 대한 도장작업을 마친 후 같은 달 예정인 진수식에 대비하여 선주 측의 도장 감독관과 나머지 도장작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그를 접대하기 위해 회식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았다.

(4) 이에 망인을 비롯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관과 도장작업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는 1차 회식을 하였다. 이때 망인은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5) 이후 1차 회식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위 감독관이 같은 날 노래방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재미있게 놀자고 제안하여 협력업체 소장과 메이커 ○○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1차 회식장소에서 70~80m 정도 떨어진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룸에 앉아 맥주를 주문하여 먹었고, 이 과정에서 망인은 상당량의 맥주를 마셨다.

(6) 망인이 소변을 보러 나간 후 보이지 않자, 일행은 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을 찾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회식을 끝내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다음 날 망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연락한 후 망인이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듣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장소를 중심으로 망인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회식 장소

근처에서 담장 너머 아래로 추락하여 담장에 등을 기댄 채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7) 망인 등이 2차 회식을 한 단란주점은 단층 건물로서 룸과 홀로 구분되어 모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었다.

(8)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담장 높이가 갑자기 어른 무릎 정도 높이인 60cm로 낮아지는 곳이어서 담장이 낮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소변을 보기 위하여 담장에 머리 등을 기대려고 할 경우에는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담장 너머 아래 바닥에는 망인이 추락할 때 복부 등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철제 운동기구와 사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밝혀졌다.

####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고자 이루어진 것이었고, 망인으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회식의 경비도 도장 1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서 지출된 점, 팀장의 지시에 따라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행위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지배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